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86
----------	------

제출연월일: 2017. 9. 6.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국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를 위하여 동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책이음 서비스 회원 관외대출 자격 부여

- 1)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0호)
- 2) “책이음 서비스 회원”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 3) “독서회원”을 “자료대출 회원 또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변경
(안 제18조제2항제1호)

나. 변상책임 삭제(안 제2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춘 문구 수정 및 추가

- 1) “해촉”을 “위촉 해제”로 변경(안 제9조제2항)
- 2) “대출기한 이내에”를 “대출기한까지”로 변경(안 제14조제2항)
- 3) “단체로부터”를 “단체에서”로 변경(안 제20조제1항)

라. 기타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의 개정 및 삭제

3. 근거법규

가. 「도서관법」 제28조제5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2017. 6. 26. ~ 7. 17.(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41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전국 도서관 통합 서비스를 말한다.

11. “책이음 서비스 회원”이란 서비스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대출기한 이내에”를 “대출기한까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독서회원”을 “자료대출 회원 또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단체로부터”를 “단체에서”로 한다.

제21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항”을 “구청장은 제1항”으로, “위탁이 철회된 경우 수탁기관은”을 “위탁을 철회한 경우 수탁기관에”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 ----- ----- 다음 각 호와 --.</p> <p>1. ~ 8. (현행과 같음)</p> <p><삭제></p> <p>10.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전국 도서관 통합 서비스를 말한다.</p> <p>11. “책이음 서비스 회원”이란 서비스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구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에 적용한다.</p>	<p>제3조(적용범위) -----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 ----- -----.</p>
<p>제9조(임기 등)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제9조(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p> <p>1. 2. (현행과 같음)</p>
<p>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위원으로서</p>	<p>3. 질병 -----</p>

현행	개정안
<p>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p> <p>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생략)</p> <p>② 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은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사람은 <u>대출기한</u> 이내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5조(이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u>전염병</u> 등 질환이 있는 사람</p> <p>2. ~ 4. (생략)</p> <p>② (생략)</p> <p>제18조(열람 및 대출)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외대출 자료를 대출해 줄 수 있다.</p> <p>1. 도서관에 <u>독서회원</u>으로 등록한 사람</p> <p>2. 3. (생략)</p>	<p>-----</p> <p>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대출기한까지</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이용의 제한) ① ----- ----- -----.</p> <p>1. ----- <u>감염병</u>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열람 및 대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u>자료대출 회원 또는 책임 서비스 회원</u>--</p> <p>2. 3. (현행과 같음)</p>
<p>③ (생략)</p> <p>제20조(기증자료) ① 개인·기관 및 <u>단체</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기증자료) ① ----- <u>단체</u>에</p>

근거법규

「도서관법」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안 번호	1386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7. 9. 6.(수)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9. 8.(금)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9. 19.(화)

2. 제안설명 요지(행정지원국장 유형목)

가. 제안이유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국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책이음 서비스 회원 관외대출 자격 부여
 -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정의 신설(안 제2조제10호)
 - “책이음 서비스 회원”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 “독서회원” ⇒ “자료대출 회원 또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
(안 제18조제2항제1호)
- 2)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 반영
 - 상위법령 준용 조문 삭제(안 제2조제9호)
 - 위원해제 사유 중 “사망” 조문 삭제(안 제9조제2항제3호)
 - 전염병 ⇒ 감염병(안 제15조제1항제1호)
 - 변상책임 조문 삭제(안 제23조)
-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4조, 제20조)
 - 해축 ⇒ 위축 해제, 대출기한 이내에 ⇒ 대출기한까지
 - 단체로부터 ⇒ 단체에서

다. 근거법규 : 「도서관법」 제28조제5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영환)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구축에 따라 회원에게 자료를 관외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